##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숭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30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 백승아 · 박해철 · 서미화

민병덕・박지혜・김 윤

한창민 · 오세희 · 용혜인

조계원 · 허 영 · 김성환

정혜경 • 황정아 • 민형배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·초·중등교원은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.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.

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시민이자 교육 주체로서 유·초·중등교원은 대학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입후보 요건을 보장받아야 함에도, 현행법 상 유·초·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선거 에 입후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임.

이에 사립학교 유·초·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·초·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(안 제59조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801호)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832호) 및 「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3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의2. 「공직선거법」제53조제1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4의3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에 따라 선거에 입 후보하려는 경우
- ③ 제1항제4호의2 및 제1항제4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휴직사유 및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제1항제4호의2·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립학교 교원이 입후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휴직의 사유) ① 사립학교	제59조(휴직의 사유) ①
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	
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	
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	
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	
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	
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	
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	
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	
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의2. 「공직선거법」제53조제1
	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
	려는 경우
<u>&lt;신 설&gt;</u>	4의3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
	법률」 제47조제1항에 따라
	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
5. ~ 13. (생 략)	5. ~ 1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
	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해
	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

	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
	<u>로 한다.</u>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$\underline{4} \cdot \underline{5}$ (현행 제3항 및 제4항
	과 같음)